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87 호 2021. 4. 22.(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8호[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4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5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4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77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4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17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4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31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모집 공고]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3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47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6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50호[행정대집행 영장] 63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78호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복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기계·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소관 분야별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

성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표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

장 부서의 장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부서 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수 있으며,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3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게시판 게시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안전의 중요성 인식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5조(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작업배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7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및 작업별 교육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제19조(교육기록)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서명부 등)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구청장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2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로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6. 위험물질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의 안전점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3과 같다.

제25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28조(보건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정신 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1조(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측정 결과보고서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 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작업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제32조(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② 구청장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3조(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발생 보고) ①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갈음)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발생한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서로 실시한다.

③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세운다.

제7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사항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구청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근로자 참여) 구청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38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9조(위험성평가의 절차) 구청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40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1조(무재해운동) ①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42조(규정의 제·개정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두고 근로자들

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로자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제17조제3항 관련)

작업명	교육내용
<p><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p>	<p>다목과 같은 내용</p>
<p><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펜·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p> <p>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솥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p> <p>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p> <p>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p> <p>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24조제2항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 원성·생식독성· 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4.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의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 자 추 가 시 예 시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들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안전·보건표지	한국산업표준
302	M017
303	M016
304	M019
305	M014
306	M003
307	M008
308	M009
309	M010
402	E003
403	E013
404	E011
406	E001, E002
407	E001
408	E002

[별표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24조제2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설치·부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 모형 번호	안전· 보건표지 일람표 번호	
금지 표지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조 립 · 해 체 작업장 입구	1	101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	1	102	
	3. 차량통행 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1	103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1	104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 베이터	1	105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1	106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 학물 질 취 급 장소	1	107	
	8. 물체이동 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1	108	
경고 표지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201	바탕은 노란색,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질산 저장탱크	2	202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2	203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보관소	2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2	205	물질 경고 및 발암성·변이
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2	206	원성·생식 독성·전신
7. 고압 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2	207	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8.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2	208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
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2	209	색도 가능)
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 작업장 입구	2	210	
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 작업장 입구	2	211	
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2	212	
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2	213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 장소	2	214	
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	2	215	

지시 표지	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3	301	바탕은 피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	302	
	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3	303	
	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3	304	
	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3	305	
	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관 금 작 업 장 입구	3	306	
	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 탄 작 업 장 입구	3	307	
	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 작 업 장 입구	3	308	
	9. 안전복 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 조 작 업 장 입구	3	309	
안내 표지	1.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공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1 (사선 제외)	401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
	2.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 구호실 앞	4	402	

	3. 들것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403	은 흰색
	4. 세안장치		위생구호실 앞	4	404	
	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 장소 앞	4	405	
	6. 비상구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앞	4	406	
	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407	
	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408	
출 입 금 지 표 지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	501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5	502	-○○○제조 /사용/보관 중
	3. 금지유해 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5	503	- 석면취급/ 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별표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31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7) 메탄올(Methanol; 67-56-1)
-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3) 벤젠(Benzene; 71-43-2)
-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45) n-부탄올(n-Butanol; 71-36-3)
- 46) 2-부탄올(2-Butanol; 78-92-2)
-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55) 스토타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56) 스티렌(Styrene; 100-42-5)
-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3) 아세톤(Acetone; 67-64-1)

-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5) 톨루엔(Toluene; 108-88-3)
-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104) 페놀(Phenol; 108-95-2)
-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 111) n-헥산(n-Hexane; 110-54-3)
- 112) n-헵탄(n-Heptane; 142-82-5)
-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흡)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흡)
-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흡)
-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흡)
-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 15) 초산(Acetic acid; 64-19-7)
 -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팔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흠(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계 법령 준수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총칙(제1조 ~ 제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제6조 ~ 제13조)
- 안전보건교육(제14조 ~ 제19조)
- 작업장 안전관리(제20조 ~ 제26조)
- 작업장 보건관리(제27조 ~ 제32조)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제33조 ~ 제35조)
- 위험성 평가에 관한사항(제36조 ~ 제40조)
- 보칙(제41조 ~ 제43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7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염포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양산**림**소장

나. 주소 : 경* **시 금오* 2*0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설치(사방시설물 설치)

4. 점용(변경)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양정동 산91번지

나. 면적: 130m²

5. 점용(변경) 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 2021. 4. 15. ~ 2021. 6. 30.

- 장기: 2021 7. 1.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7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양 정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

나. 주소 : 울산**시 *구 삼*로 15*번길 5-** 20*동 1**3호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오수관로 매설 및 공사용 비계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양정동 776-36번지

나. 면적

- 일시: 7m²

- 계속: 4m²

5. 점용 허가 유효기간

- 일시: 2021. 5. 1. ~ 2022. 5. 1.

- 계속: 2022. 5. 2.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77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대 안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사

나. 주소 : 울산**시 *구 명촌**길 8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전주 신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안동 1041-60번지

나. 면적

- 일시: 0.7m²

- 계속: 0.13m²

5. 점용 허가 유효기간

- 일시: 2021. 4. 21. ~ 2021. 4. 22.

- 계속: 2021. 4. 23.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17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4.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80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4. 16. ~ 2021. 5. 3.(18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 가. 복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나. 복구 소재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사업체에 소속된 자
 - 다. 선정 후 사전교육 수료가 가능한 자
6. 주요기능
 - 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 나.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다.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필요 시)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나. 이메일 : mini0208@korea.kr
9. 선정결과 : 2021. 5. 7.(금)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2-241-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를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비 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위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4.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8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4. 20. ~ 2021. 5. 3.(14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5. 모집대상
 - 가. 예산관련 전문가(교수,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 나. 관련분야 종사자
 - 다. 시민단체 관계자
 - 라.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6. 주요기능
 -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활동
 -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등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필요 시)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나. 이메일 : mini0208@korea.kr
9. 선정결과 : 2021. 5. 7.(금)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2-241-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 위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33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제정, 2021. 7. 13. 시행)의 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 조문으로 변경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2항, 제28조제1항)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제2장의 제목)
- 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중복 사항 삭제
(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3.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15
- 팩스번호 : 052-241-7109
- E-mail : she2011@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목적에 위배”를 “목적에의 적합”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 ⑦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 4. (생략)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따른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

1. ----- 목적에의 적합 -----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제25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 법 제21조제1항-----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

----- 법 제21조제3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 60조-----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547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대표자변경)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등록번호 : 제2013-3호
2. 업 소 명 : 현대자동차(주) 울산서비스센터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317(효문동)
4. 전화번호 : 052-283-7500
5. 대 표 자 : 장재훈 (전 : 하언태)
6. 검사항목
 - 정비분야 : 휘발유·LPG 분야, 경유
 - 확인검사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시설6급

성 명: 노선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1년 4월 21일, 제2021-550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행 정 청 장

직인